



연 세 대 학 교

교 무 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19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신청에 따른 안내

1.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의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간	방식	세부 내용	기타
2학년 이상	수강신청	8.7. 09:00 ~ 8.8. 17:00	마일리지 선택제	- 신청시점과 상관없이 기간 중 아무 때나 마일리지를 배분하여 수강과목을 입력	- 지난 수강신청의 결과조회 가능 - 1차 복학생 포함(8.1 ~ 8.7 복학허가자)
	신청결과 조회	8.9. 16:00 ~ 8.12. 08:59		- 마일리지/동점자우선순위에 따른 결과 공개 - 희망과목담기 가능	
	추가수강 신청	8.12. 09:00 ~ 8.13. 17:00	대기순번 제	- 초기대기번호는 수강신청기간의 마일리지 및 동점자우선순위에 따라 적용 - 정원초과과목 신청시는 대기번호 부여	
신입생 및 1학년		8.27. 09:00 ~ 17:00		- 정원초과과목 신청시는 대기번호 부여	- 약학대학 3학년 포함 - 대상자 중 8.1 ~ 8.26 복학허가자
2차복학생 수강신청		8.22. 09:00 ~ 17:00		- 정원미달과목 신청 가능 - 기간 시작전 기존 대기번호 및 대기리스트는 모두 초기화 - 정원초과과목 신청시는 대기번호 부여	- 2학년이상 8.8 ~ 8.21 복학허가자 - 신입생 및 1학년 제외
3차복학생 수강신청		8.29. 09:00 ~ 17:00			- 8.22 ~ 8.26 복학허가자 - 신입생 및 1학년 제외
수강변경		9.5. 08:00 ~ 9.9. 17:00			

2.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Y-CES 수강신청 제도는 축적된 마일리지사정자료를 바탕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분반·정원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의 개설 현황 및 정원의 설정이 해당 자료 및 과목의 성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공자정원 및 학년별정원이 설정되는 과목의 경우,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고 수강신청 기간 도중에 해당 정원의 설정을 조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강의의 담당교수로 하여금 수업계획서의 [수강대상]란에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계획을 명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학년 (학년별정원은 수강신청(마일리지선택제)기간 까지 적용함)
예시2) ○○학과 (전공자정원은 추가수강신청기간 까지 적용함)
예시3) ○학년, ○○학과 (학년별정원, 전공자정원은 전체 수강신청기간 동안 적용함)
예시4) ○학년, ○○학과 (신청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전공자정원을 설정하였으나 전공학과를 입력하지 않아 전공자가 신청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 전공학과가 입력되었는지 수강신청 기간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 또는 방식과 별개로 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수강신청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졸업을 위해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있는 4학년 학생 및 대학간 협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외국대학교 교환·방문학생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며,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청하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는 초과학기생들을 고려하여 9월 10일(화) 12:00까지만 수강신청 내역이 입력·수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수강신청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과정개편 및 강사 공개채용 등에 따라 여러가지 일정이 지체됨으로써 학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강신청일 이전에는 담당교수 및 유의사항, 성적평가방식, 수업계획서 등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재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교육부의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사항(관련 규정 명문화) 이행조치에 의해 학사에 관한 내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으므로, 학과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2 (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자세한 내용은 불임의 제도안내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 임
1. 수강신청 제도안내 국·영문 각 1부.
 2. 학생용 수강신청 매뉴얼 국·영문 각 1부. 끝.

교 무 처 장

직 인 생 략

수신자 의과대학장, 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윤리인권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 문과대학장, 상경대학장, 경영대학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생명시스템대학장, 신과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음악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교육과학대학장, 학부대학장, 언더우드국제대학장, 약학대학장, 글로벌인재대학장, 연계전공 대표 책임교수, 교목실장(선교지원팀장), 국제처장(국제교류팀장), 원주교무처장(교무부장)

차장 정우숙

학사지원팀
장 오승훈

부처장 김성문

교무처장 07/24
손영종

협조자

시행 학사지원팀-1879 (2019.07.24.)

접수 천문우주학-488 (2019.07.24.)

우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전화 02)2123-2086

전송 02-2123-8611

/ woosou@yonsei.ac.kr

/ 공개